

동물학대, 처벌만 강화?... “생명존중 의무교육 필요”

“우리 사회, 아직 동물을 물건 취급하는 경향 있어”

“지자체에서 보호소 운영하며 교육시스템 갖춰야”

동물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소유권 포기를 포함해 생명 존중을 가르치는 의무교육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정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동물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동물복지 향상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동물학대 관련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게시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 청와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제도 개선을 약속한 답변도 벌써 4건에 이른다.

여기에는 최근 자신의 강아지를 학대한 유튜버 A씨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에는 등의 자들이 20만명을 넘겨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과거라면 크게 부각되지 않았을 동물학대 사건도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등은 동물학대로 보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실형이 아닌 기벼운 벌금형으로 그치면서 동물학대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유튜버 A씨는 지난 1월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또 방송에서 대놓고 반려견을 학대하고 방문한 경찰까지 비웃는 등의 행동으로 보는 이들을 충격에 빠뜨리면서 동물보호법 강화 필요성에 불을

지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동물보호법 강화도 중요하지만 동물학대를 했을 경우 처벌 뿐 아니라 사회봉사명령과 같은 의무교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사회봉사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해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는 것이다.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통상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윤재영 인천시수의사회장은 “우리 사회가 아직 동물을 물건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며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생명 존중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동물보호소를 운영하면서 교육시스템을 갖춰 동물학대를 한 사람들에 대해 소유권 포기와 함께 특정 시



간 이상 생명 존중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동물학대 처벌 수위가 징역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됐지만 형법 등 다른 법들의 처벌 수위를 고려하면 또 다시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 등을 통해 동물학대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뉴스1

“고양이 학대범 강력 처벌” 청원…青 “동물학대 관련 제도 개선”

“유사한 사건 연이어 발생 유감…처벌 유형별 차등화”



지난 7월 13일 경의선 숲길에서 살고 있던 고양이 ‘자두’가 잔혹하게 살해됐다. 사진 CCTV 영상 일부



청와대는 지난 8월 30일 ‘고양이 학대 강력처벌 및 대책마련 촉구’ 청원에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보호 전반에 대한 기관 간 업무협조를 위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청원은 지난 7월 13일 서울 마포구에서 벌어진 고양이 ‘자두’ 학대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및 강력처벌, 동물학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한 달 동안 21만 240명이 동의했다.

동물복지 관련 청원에 청와대가 답변한 것은 이번이 4번째로, 지난 7월 4일 수간 사건과 관련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제도적 보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유사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농식품부에서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동물학대 행위의 범위 확대, 동물학대 처벌강화 및 재발방지를 포함한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해 발표하는 등 동물학대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정책과제에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층 더 강화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

위, 상해를 입히는 행위,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과 같은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유형별로 차등화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면서 김 팀장은 “국회에 제출돼 있는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하루빨리 진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지난 2일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로 동물을 이용한 도박을 광고·선전하는 행위가 처벌대상에 포함되는 등 조금씩 개선이 이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두’를 학대한 피의자에 대한 처벌 요구과 관련에서는 “경찰이 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확인하고 지난 7월 29일 기소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다면 청원인이 요구한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은 현행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비밀엄수의무 등에 근거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동물학대 행위 근절뿐만 아니라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등 주요 정책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필요하다”며 “현장지도와 단속 방안, 제도 개선 방향 등을 포함한 동물보호 전반에 대한 기관 간 업무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경찰청 간 협의체 구축·운영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11마리 동물 입양과 파양 반복”

유명 유튜버 ‘애니멀호더’ 의혹

한 유명 유튜버에 대해 ‘애니멀호더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애니멀호더는 동물학대의 한 유형으로, 동물을 수집에 가깝게 모으는 행동을 말한다. 동물을 잘 돌보는 것 보다는 수를 늘리는 데에만 집착하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동물에게 상해와 질병을 유발하기도 한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명 유튜버가 ‘애니멀호더’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유튜버는 일상을 리아브 방송으로 공유하는 콘텐츠로 유명하다. 해당 유튜버는 몇 년에 걸쳐 동물 입양과 파양을 반복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누리꾼들은 해당 유튜버가 3년간 11마리 동물을 기르며 입양과 파양을 반복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품종묘와 품종견만 입양했으며, 이해되지 않는 이유로 고양이를 파양하는 등 반려동물 입양과 파양 과정이 애니멀호더의 행동으로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들어 애니멀호더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르던 동물을

을 포기해 버리는 애니멀호더로 인해 대량의 유기 동물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에는 22마리의 개를 키우던 애니멀호더가 자신의 개를 땅에 던져 죽여 만든 사건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새로운 동물학대의 유형으로 애니멀호더가 대두되면서 이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도 작년 10월 마련됐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상하나 질병이 없으면 학대로 인정되지 않아 여전히 애니멀호더에 대한 처벌은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외의 경우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한 사람이 개를 3마리 이상 키울 수 없다. 또한 호주에서는 반려견을 4마리 이상 키우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